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호)

◦ 2026.07.08.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07.08.

- 김해바른·김형우·박미정·하서영·김안숙 의원(총5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07.07.

다. 상 정 일 자 : 2026.07.08.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우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1)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1)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²⁾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³⁾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방법 및 위원 수)

- 위 원 의 수 : 9명 이내
- 위원 의 선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

○ 회부안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 본회의 의결 시까지

○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질문과 답변 실시
-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짜구정리내용 : 없음